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32회 정기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96. 12. 26)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송 원 호)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제정 재해대책에 완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 관리
 - 도지사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 (국채, 공채 매입 또는 금융기관)으로 예탁 관리하고,

- 잔여분은 당해년도 시업비 총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며 적립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참석위원 7인 만장일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